

물재생센터 음폐수 반입에 따른

주민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

- 1. 사업명 : 물재생센터 음폐수 반입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보조
- 2. 교부대상 : 성동구청
- 3. 교부결정액 : **금이억팔천이백만원(₩282,000,000)**

○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

교부처	보조사업명	교부액(원)	금회 교부액(원)
		시보조금	
성동구	주민지원사업 보조금	282,000,000	282,000,000

○ 교부방법 :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

4. 예산과목

○ 물재생센터 음폐수 반입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비

-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, 클린도시조성, 음식폐기물감량 및 안정적처리기반구축, 음폐수처리자치구보조사업, 자치단체자본보조 (100-403-01)

5. 교부조건

- 해당 자치구에서는 교부금을 결정된 내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주민지원 사업 용도로만 집행하여야 함
-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
- 사업집행결과 잔액이 발생할 시는 관련규정에 의거 시에 반납하여야 함
- 기타 관계법규 및 시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
2015. 6.

서울특별시